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6
----------	------

2017년 3월 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6일, 서울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3월 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가. 제안이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하천법」에 맞추어 5퍼센트 이상 증가시 5퍼센트 적용(안 제6조)
- 2)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및 독촉
- 증가산금 삭제(안 제8조)
- 3)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점용료 반환시 「하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조례안은,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과·징수되는 점용료, 납부 기한 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징수되는 증가산금,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점용료 반환 시 가산되는 이자율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서울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부과·징수 건수는 평균 2,248건, 부과·징수액은 평균 24억3천만원이고, 건수 증가율은 연평균 0.97%, 부과·징수금액 증가율은 연평균 0.89%를 보이고 있음.

[표 2] 하천점용료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점용료+변상금)		점용료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도	2,176	2,163,851	1,956	1,998,553	220	165,298
2013년도	2,199	2,404,537	1,878	2,166,152	321	238,384
2014년도	2,238	2,511,820	1,842	2,006,907	396	504,913
2015년도	2,326	2,667,281	1,941	2,333,187	385	334,094
2016년도	2,299	2,423,652	1,918	2,172,583	381	251,069
평 균	2,248	2,434,228	1,907	2,135,476	341	298,752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점용료등의 조정(안 제6조)

-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서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때 별표2의 별도산식1)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2)과 동일하게 5% 이상 증가할

1) [별표 2]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제6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등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사용료 + [전년도점·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사용료 + [전년도점·사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사용료 + [전년도점·사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사용료 + [전년도점·사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사용료 + [전년도점·사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사용료 + (전년도점·사용료 × 25/100)

※ 점·사용료의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2)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략)

② (생략)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0.>

④ (생략)

때마다 별도산식에 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려는 것임.

[표 4] 안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u>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u>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u> ----- ----- ----- -----

- 여기서, 영 제42조제3항은 2011.1.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별 점용료의 증가율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5%로 제한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을 간과하여, 지난 6년간 본 조례를 상위법과 다르게 운용³⁾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과오납된 점용료는 현재까지 집계된 2014년 이후 부과건수가 약 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 적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과오납된 점용료를 면밀히 산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납부자에게 정산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5] 2014년 이후 5%이상 증액된 경우의 점용료 부과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68	29,519,685	142	40,963,661
2014년도	90	4,288,300	66	15,088,838
2015년도	43	3,830,545	48	10,152,043
2016년도	35	21,400,840	28	15,722,780

주 : 상기 금액은 해당 건수에 대한 점용료 전체 부과액으로 이 중 과오납액은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파악 중에 있음.

3) (참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2016년도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조례에 따라 전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인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 증가분의 최대 2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불법·부당하게 징수한 점용료가 55건 272만9,058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음.(2016.11.8., 광주드림 인터넷신문)

나. 가산금 및 독촉(안 제8조)

- 안 제8조는 현행 조례에서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 제67조제1항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표 6] 안 제8조(가산금 및 독촉) 개정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u>	제8조(가산금 및 독촉) ----- ----- ----- <u>가산금</u> ----- <u>을 ----- 있다. 이 경우,</u> <u>가산금의 -----</u> ----- <u>제21조를 따른다.</u>

- 2011년도 이후 징수된 증가산금은 총 555건 1,409만3천 원으로, 매년 평균 111건 281만8천 원이 징수되고 있는 상황임.

[표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가산금		증가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55	9,738,337	555	14,093,418
2012년도	115	1,775,927	106	3,081,993
2013년도	111	2,311,565	115	2,608,901
2014년도	93	1,478,527	134	3,399,564
2015년도	136	3,089,860	132	3,678,320
2016년도	100	1,082,458	68	1,324,640

- 법 제67조제1항4)은 1999.2.8일 전면 개정되어 동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서울시는 본 조례를 2000.1.15일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산금 이외에 「국세징수법」 제22조의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조례를 시행해 왔음.
- 여기서, 증가산금의 근거규정인 「국세징수법」 제22조는 2011. 4.4일자로 삭제되어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5)으로 통합되었기에 금회 이를 바로 잡으려는

4) 「하천법」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5) 제21조(가산금) ① (생략)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 점용료등의 반환(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하천관리자가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을 해당 납부자에게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반환이율이자)을 영 제78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8] 안 제10조 점용료등의 반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생략) ②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는 최종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하천법시행령 」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 -----. ③ (현행과 같음)

- 여기서, 영 제78조6)는 2010.1.1일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7)를 따르도록 개정·시행된 바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반환이율이자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제1조제2항에 따라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의 연차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서울시에서 적용 중인 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9] 신규취급액기준 COFIX 현황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OFIX 평균	3.48	3.18	2.75	2.20	1.74

④ (생략) ⑤ (생략)
 6)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8)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말함. 즉,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코픽스 연동대출이라고 함.

-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2010.1.1.일 이후 현행 조례와 같이 6%의 반환이율이자
를 가산하여 반환금을 과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향후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조치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현 점유자 중 해당자가 있을 경우엔 향후
점용료 산정과정에서 정산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의하여”를 “따라”로, “말한다.이하”를 “말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연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8조 전단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가산금을”로,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를 “가산금의”로,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를 “제21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 6퍼센트의”를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입한”을 “납입할”로, “해당자치구”를 “해당 자치구”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점용료·하천수사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와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필요</u> ----- -----.</p>
<p>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이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천관리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한강사업본부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u></p>	<p>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u> ----- ----- <u>않</u> <u>다고</u> ----- ----- <u>따라</u> ----- ----- <u>한다. 이하</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필요</u> ----- -----.</p>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u>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u>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u> ----- ----- ----- ----- -----.</p>
<p>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p>	<p>제8조(가산금 및 독촉) -----</p>

현행	개정안
<p>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u>이 경우,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u></p> <p>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생략)</p> <p>②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는 최종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징수교부금)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 점용료등을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u>납입한 때</u>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u>해당자치구</u>에 교부한다.</p> <p>1. 2. (생략)</p>	<p>----- ----- <u>가산금을</u> ----- <u>있다.</u> 이 경우, <u>가산금의</u> ----- ----- <u>제21조를 따른다.</u></p> <p>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징수교부금) ----- ----- <u>납입할</u> ----- ----- <u>해당 자치구</u>-----.</p> <p>1. 2. (현행과 같음)</p>